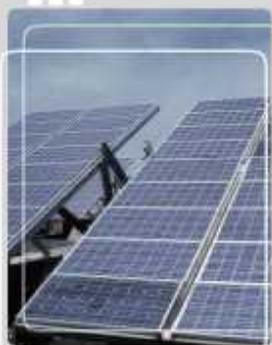


2013년 美 USTR 무역장벽보고서 평가 및 시사점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2013년 美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개황 / 3

II.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장벽 내용 분석 및 평가 / 5

III. 평가 및 시사점 / 24

IV. 美 무역장벽보고서 요약 / 25

25	1. 한국
30	2. 중국
34	3. 일본
38	4. 베트남
40	5. 인도네시아

요 약

□ 미 무역대표부, 2013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61개국), 위생검역 보고서(48개국), 기술장벽보고서(18개국) 발표

-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는 업계의 의견 등을 기초로 만들어 매년 3월말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임. 미국 업계의 교역활동에 장애가 되거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무역, 기술장벽 및 통상현황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진전 사항을 국별로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을 제시함.
 - 무역장벽보고서 중 우리나라 관련 분량 9쪽, 중국 41쪽, EU 23쪽, 일본 15쪽임.
- 2010년부터 무역장벽보고서에서 농축산물 수출 관련 위생검역보고서 (SPS 보고서) 및 제품표준, 테스트 요건 등 기술장벽보고서(TBT 보고서) 분리하여 별도 발표

□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시장접근 및 제도 개선 사항들을 구체적인 성과로 기술했으며, 지재권, 방송쿼터 등 단골 이슈에 대한 부연설명 가감이 주를 이룸.

- 주요 개선내용 : 자동차시장 접근성 향상, 법률, 보험 및 금융서비스 등 서비스분야 시장접근성 향상 등
- 신규 장벽 : 전자상거래 시 개인정보 국외서버 저장 불허,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 인하정책, 10ml 이상 모든 화장품 포장지 라벨링 의무 부과, 휴대폰 전자파 흡수율 2등급 표시제 등

□ 우리나라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 요구 거세질 듯

- 한미 쇠고기 협상이 2008년 타결된 이후 우리나라가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 미국정부는 우리나라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취한 조치라고 밝히며, 완전한 시장개방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언급

- 아시아 주요 교역대상국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통관절차, 열악한 지적권 보호제도, 각종 서비스분야 진입장벽 등을 주요 무역장벽으로 지적
- 세계 경제블록화 경쟁에서 미국과 주도권을 다투고 있는 중국의 경우, 무역장벽보고서 중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전체 406쪽 중 41쪽 분량)하여 불합리한 통관절차, 주요 원자재 수출규제정책, 열악한 지적권 보호제도, 폐쇄적인 정부조달시장, 보험·은행·통신 등 서비스분야 진입장벽 지적
 - 일본에 대해서는 쇠고기·쌀·수산물·가공식품 등 식품류에 대한 불합리한 수입억제정책, 보험·통신·IT 등 서비스분야에서의 진입장벽과 함께 자동차, 화장품 등 개별산업에 대한 장벽 제시
 - 중계무역중심지인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ASEAN 국가 중 우리나라 최대 수출대상국인 베트남(2012년 기준)의 경우, 비효율적인 통관절차와 열악한 지적권 보호제도, 불투명한 행정제도 등을 무역장벽으로 꼽음.
 - 세계 4위의 인구대국으로서 거대한 내수시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수입허가제도, 불합리한 통관절차, 열악한 지적권 보호제도,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서비스분야에서의 장벽을 무역장벽으로 제시

I. 2013년 美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개황

□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의의

-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¹⁾는 1974년 통상법²⁾, 1988년 종합 무역법³⁾ 등에 의거, 美 무역대표부(USTR)가 업계의 의견 등을 기초로 매년 3월말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
 - 미 업계의 교역활동에 장애가 되거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무역, 기술 장벽 및 통상 현안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진전사항을 국별로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을 제시함.
- 2010년부터 NTE 보고서에서 기술장벽보고서(TBT 보고서)⁴⁾와 위생검역 보고서(SPS 보고서)⁵⁾를 분리하여 별도 발표
 - 기술장벽보고서는 제품 표준, 테스트 요건 등 비관세장벽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관세장벽이 점점 낮아짐에 따라 이러한 종류의 표준관련 비관세장벽이 주요 관심사로 대두
 - 위생검역보고서는 미 농축산업계가 농축산물 수출 시 직면하게 되는 각국의 위생검역장벽에 대한 내용으로 음식료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동식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와 절차 위주로 구성

1)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이하 NTE 보고서로 약칭

2) Trade Act of 1974

3)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4) Repor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TBT 보고서로 약칭

5) Repor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이하 SPS 보고서로 약칭

□ 조사 대상 및 범위

- NTE 보고서는 EU, 중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61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과 투자장벽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술
 - 주요 조사범위로는 수입정책, 정부조달, 산업보조금,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장벽, 투자장벽, 반경쟁적 관행, 전자상거래, 기타 장벽이 있음.
- TBT 보고서는 미국의 18개 주요 교역국의 기술장벽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으며, 라벨링, 인증, 안전기준 등 각종 표준과 테스트 요건 등이 주요 조사범위임.
- SPS 보고서는 미국의 48개 주요 교역국의 위생검역장벽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으며, 생명공학, 식품안전, 동식물 검역 등이 주요 조사범위임.

II.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장벽 내용 분석 및 평가

□ 2012년과 2013년 내용 비교

- 작년에 이어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시장접근 및 제도개선 사항들을 구체적인 성과로 기술하며, 단골 이슈에 대한 부연설명 가감이 주를 이룸.
 - 우리나라에 대한 2013년 보고서는 9쪽 분량으로 작년과 동일
 - * 중국, EU, 일본은 각각 41쪽, 23쪽, 15쪽 분량에 달함.
 - * 2010년부터 별도로 발간하는 SPS와 TBT 보고서 포함 시 총 14쪽 분량
 -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 및 투자장벽 등에 대한 이슈 외에 정부규제 및 시행 과정의 투명성 문제 등이 반복적으로 거론됨.
- 주요 개선 내용
 - 2012년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한 쇠고기는 5억 8,200만 달러로 한국은 미국의 4대 쇠고기 수출시장이 되었음. 미국은 위험통제국 지위,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완전한 한국시장 개방을 위해 노력할 것임.
 - 한미 FTA로 인한 법률분야, 보험 및 금융 분야의 시장 접근성 향상을 긍정적으로 평가
 - 통신정책 관련,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지분 상한선을 49%로 제한하고 있으나, 2014년 3월부터는 한미 FTA 협정에 따라 미국 업체가 100%까지 소유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더불어 2011년 12월 통과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공정위에 한미 FTA 발표일 이후 피조사자(respondent)와의 합의권이 부여된 내용 기술

- 한미 FTA 발효로 인한 자동차관세 인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2012년 우리나라의 미국산 승용차 및 상용차 수입이 전년 대비 50% 증가하였으며, 상당부분은 FTA 발효시점 이후라고 언급
- 2012년 9월에 환경부가 의회에 재상정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대한 법률에는 이중보고 의무와 최소기준 수정 요구가 반영되었으나 최종 법안에 포함될 지는 아직 미지수
-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농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3년 5월 발효를 앞두고 있으나, 동등성 협약은 2014년부터 적용돼 이를 앞당겨 2013년부터 적용하기 위한 협상 추진
-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이 비실리콘계 솔라패널인 카드뮴 솔라패널의 환경 위험성을 평가하고, 동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인증기준 마련 고려 중
- 자동차부품 안전기준 및 인증 관련, 2012년 이후 수개월 간의 논의를 거쳐 자동차부품에 대한 외국의 안전기준 적용방식과 마킹(marking)에 대한 문제를 해소함.
- 위생검역 관련, 2012년 말 우리나라 국회에서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이 개정되어 2013년 발효를 앞두고 있음. 미국 정부는 기존 우려사항이 반영된 것을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협의할 계획임.

○ 신규 장벽

- 지식재산권 관련, 국방부에서 인가받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으며, 미국이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 공공기관이 합법적이고 인가받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음을 언급
- 인터넷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관련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개인 정보를 국외 서버에 저장하는 것을 불허하는 정책과 관련해 인터넷 결제 시스템, 지도 정보 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 장벽 우려

- 2012년 환경부가 마련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에 근거해서 신차 구입자의 차량 가격에 보조금 또는 불이익(부과금)을 주는 제도에 대해 우려 표명
- 2012년 10월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산 의료기기 판매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5개 분야에 대한 가격인하를 의료기기업체에 공지했으나, 가격산정 기준에 불합리성이 있다고 지적
- 2012년 8월 10ml 이상의 모든 화장품 포장지에 표기(labeling) 의무를 부과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며, 법안 통과 시 미국 기업들에게 상당한 비용 및 부담 초래가 예상돼 미국 정부는 예의 주시 중
- 우리나라 정부가 2012년 휴대폰 전자파 흡수율 등급을 2등급으로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제 고시안을 공개하였으며, 미국정부는 기준에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구매자 호도 가능성 우려

□ 2013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 주요 내용

○ 교역 전반

- 2012년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상품무역적자는 166억 달러로, 2011년에 비해 33억 달러 증가함.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액은 42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 하락하였으며(우리나라는 미국의 8대 수출시장),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589억 달러로 3.9% 상승
-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국방 및 정부조달을 제외한 민간 상업서비스 수출은 2011년 기준 166억 달러이며, 수입액은 84억 달러를 기록함.
-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기업의 서비스 매출은 2010년 기준 10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서비스 매출은 100억 달러를 기록함.

○ 한미 FTA 발효 이후 변화

- 미국의 7번째 교역국인 우리나라와 한미 FTA 발효로 5년 이내에 95%가 넘는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 철폐 예정
- 2/3에 달하는 미국 농산물이 즉시 관세면제혜택을 받으며, 대부분의 주요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이 진행됨.
- 통신, 특사배송 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 해외법률자문시장 개방, 보험 및 기타 금융업에 대한 시장접근성 확대와 투명성 및 공정성 담보 등 예상
- 또한 다양한 분야의 비관세장벽을 지적하고, 지식재산권, 경쟁정책, 노동, 환경 및 규제 투명성 등에 대해 강화된 조항이 포함됨.

○ 수입정책

① 관세 및 세금

- 한미 FTA로 인해 미국 농산물의 2/3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됨.
- 우리나라는 여전히 일부 수입 농수산물과 합판 제품에 대해 조정관세 (adjustment tariffs)를 적용하고 있으나 한미 FTA나 WTO의 양허관세율을 초과하지는 않음.
- 한미 FTA에 의거, 우리나라는 2017년까지 95%가 넘는 생산재 및 소비재에 부과되는 관세 철폐 예정

② 쇠고기

- 2008년 수입위생조건 합의 이후 양국 수출입 업자들이 30개월령 이하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자발적으로 제한했으며, 이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신뢰가 확보될 때까지의 한시적인 조치임을 명시

- 2012년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쇠고기 수출량은 5억 8,200만 달러에 달해 미국의 4대 쇠고기 수출시장이 되었음. 미국 정부는 미국의 위험 통제국 지위,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완전한 시장개방 노력을 기울일 것임.

③ 쌀

- 우리나라는 MMA(Minimum Market Access; 최소시장접근) 허용의 대가로 수입쌀 관세화를 2004년 말까지 10년간 유예받음.
- 2005년 4월, WTO에서 MMA를 10년 연장하는 대신 우리나라의 쌀 수입량 쿼터를 2005년 225,575톤에서 2014년 408,700톤으로 확대하는 것에 합의
- 추가 조건으로 우리나라는 중국, 태국, 호주산 쌀에 대해 국가별 할당 의무(CSQ; country specific quota)를 갖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는 2014년까지 매년 최소 50,076톤의 쌀을 수입하기로 함.
-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쌀 수출량이 현저하게 늘었고, 2012년 100,901톤의 쌀(7,800만 달러 상당) 입찰을 따내 우리나라 총 MMA 수입량의 27%를 차지함.

○ 정부조달

- 한미 FTA 체결로 미국은 WTO 정부조달협정(GPA)에서 적용되는 기구보다 9개가 추가된 50개 이상의 중앙정부기관 조달에 참여할 수 있게 됨.
- 또한, 양허하한선(조달시장 진출 최소금액 규모)이 20만 3,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절반 이상 줄어들어 미국이 접근 가능한 조달시장 규모가 확대됨.

- 한미 FTA는 지방정부와 정부소유기업의 조달시장은 포함하지 않지만 동 조달 대상기관은 WTO 정부조달협정에 포함됨.
-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우리나라의 건설서비스 분야 양허하한선은 미국의 3배에 달하는 2,300만 달러 수준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음.

① 공공조달 네트워크 장비 암호화 기술

- 2009년 7월 우리나라는 암호화 네트워크 장비의 경우, 국가정보원의 인증을 받도록 새로운 규제 시행
-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암호화 표준(ARIA, SEED) 기술을 포함한 장비를 구매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암호화 네트워크 장비 알고리즘인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 배제
- 미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기술을 포함한 장비가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 예정

○ 산업 수출 보조금

- 과거에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정부보조금 지원창구로 활용됐으나 시중은행으로서의 산업은행과 정책금융역할을 위한 한국정책금융공사로 분리됨.
- 미국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유사한 정부 소유 금융기관의 대출 관행을 모니터링 할 계획임.

○ 지식재산권 보호

-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지재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지재권 보호의 일환으로 상습적 침해사범에 대한 엄벌제도(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웹하드의 방통위 등록 의무화를 시행함.

- 우리나라는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 체결국 중 하나이며, 한미 FTA는 모든 종류의 지적권에 대한 선진적인 보호 조항, 주요 다자간 지적권 협정 가입 의무 및 단속 조항 등을 포함
- 우리나라는 지적권 보호에 있어 그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온라인상 침해, 기업 내 소프트웨어 지적권 침해, 대학가 서적 불법복제 등의 문제는 상존
 - 특히 국방부에서 인가받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 공공기관이 합법적이고 인가 받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을 건의함.

○ 서비스 장벽

① 스크린 및 방송 쿼터

-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수를 연간 73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상파, 케이블, 위성 TV, 라디오 방송, IP TV에 대해서도 외국 방송물 쿼터제 운영
 - 전체적으로 외국 프로그램은 지상파나 라디오 방송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반기에 케이블 또는 위성방송 시간의 50% 이내로 제한
 - 이러한 쿼터제 내에서 연간 방송시간 쿼터는 추가적으로 외국 영화 방영시간을 제한하는데, 지상파 방송에서는 총 영화 방영 시간의 75%, 케이블, 위성 방송에서는 80%로 제한함.
 - 외국 애니메이션은 지상파 애니메이션 방영 시간의 55%, 케이블 및 위성방송의 70% 이내로 편성해야 하고, 외국음악은 음악방송 중 40% 내에서 편성 가능

- 분기별 기준, 특정국가의 콘텐츠는 전체 외국산 영화나 애니메이션, 음악에 배정된 총 쿼터의 80% 이내로 제한
- 한미 FTA는 국내 콘텐츠의 의무방영 시간을 늘리는데 제한을 두며, 온라인 비디오와 같은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에는 지금의 쿼터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

② 더빙(voice-over) 및 지역광고 제한

- 방송법에 의거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는 외국 재송신 채널에 대한 한국어 더빙 및 지역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됨.

③ 법률 서비스

- 한미 FTA 발효로 법률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됨.
- 1단계로 2012년 한미FTA 발효와 동시에 외국인 법률전문가의 법적 지위를 마련하고, 외국계 로펌이 우리나라에 사무실을 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함. 또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외국인 변호사가 전문 분야에 대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2단계로 2014년부터 외국계 로펌과 국내 로펌의 파트너십 체결 (cooperative agreements)이, 3단계로 2017년부터는 외국인 변호사와 회사가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우리나라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을 허용함.

④ 보험 및 은행

-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큰 보험 시장으로,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는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자회사 또는 지사 설립을 허용함.

- 한미 FTA는 민간보험사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허가 보험협동조합(government-sanctioned insurance cooperatives)도 민간보험사와 같이 금융위원회의 규제 아래 있음을 명시함.
- 동 조치는 2015년부터 시행되나, 우리나라 정부는 이에 앞서 농협중앙회법을 개정,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신설
-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은 여전히 금융위원회의 규제 대상이 아니며, 한미 FTA의 관련 조치가 완전히 이행되기 전까지 해당 기관에 유리한 법규 적용
- 한미 FTA에 따라 금융관련 법규 사전고지 기간 연장으로 법규 투명성을 늘리도록 함.
- 우리나라는 철저한 정보 보호규정을 따르도록 요구하며, 서비스 제공 서버를 국내에 두도록 하고, 해외로의 데이터 이동을 제한
- 이는 외국업체가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해 결과적으로 외국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장벽으로 작용
- 한미 FTA와 한-EU FTA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특정 정보처리 업무의 국외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함.

⑤ 통신

- 우리나라 정부는 외국 위성사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
- 이 같은 투자제한조치와 현지 주재 요구는 외국 위성 서비스 제공 업체가 국내에서 활동하는데 상당한 실질적 장벽으로 작용

⑥ 인터넷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 외국에서 고객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이 온라인 판매 및 전자결제 등을 포함한 인터넷 서비스 장벽으로 작용
- 여신전문금융업(Credit-Specialized Financial Business) 규제는 원화로 상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이 우리나라 소비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로 인해 외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시장진입이 어려운 상황임.
- 보안상의 이유로 외국에서 고해상도 위성 영상자료와 관련 지도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 또한 금지
- 따라서 현지에 기반을 둔 업체의 경우, 실시간 교통정보 및 길 찾기 기능 등 특정 서비스 제공이 허용된 데에 반해, 외국 서비스 제공업체의 경우에는 동 서비스 제공 불가
- 그러나 우리나라 소재 서비스업체들이 제공하는 정보들이 외국에서도 접속가능하기 때문에 보안상의 이유로 데이터 저장을 금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미국기업의 진출 장벽으로 규정할 수 있음.
- 미국정부는 우리나라의 보안에 대한 우려 의식을 존중하는 한편, 인터넷의 글로벌 속성을 반영해 지도 데이터 관련 정책을 개정하도록 노력할 것
- 미국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입법제안의 대대적인 수정 계획을 발표했으며, 미국정부는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임.

○ 투자 장벽

-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총 외국인 소유지분, 외국인 개인소유 한도, 정부, 기업, 특정 채권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 상한선이 상향 조정되거나 철폐됨. 이로써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발행한 단기 금융상품의 외국인 구매를 자유화 함.
- 다만, 일부 미국 투자자들은 과세 등 투자 관련 규제의 투명성 부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함을 지적하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별 우려 제기
- 우리나라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상한선을 49%로 제한하는 규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2014년 3월부터는 한미 FTA 협정에 따라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 통신 운영업체를 100%까지 소유할 수 있음.
- 지상파 TV 운영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으며, 케이블 TV 관련 시스템 운영업체나 네트워크 운영업체 및 프로그램 제공업체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49%로 제한
- 2011년 3월, 이전까지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었던 일반 채널 프로그램 제공업체에는 20%, 전문 뉴스 채널 프로그램 제공업체에는 10%로 투자 제한 수준이 완화됨.
- 위성방송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33%로 제한되며, 외국 위성 재송신 채널은 총 운영 채널수의 20%로 국한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및 재송신 케이블망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20%로 제한
- 통신 분야 외에도 쌀과 보리 경작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육류 도매업에 대해서도 외국인 지분이 50%로 제한되어 있음.
- 발전·배전·전기 판매에 대해 50%, 뉴스 발간매체에 대해서는 30%, 기타 정기간행물 발간업체에 대해서는 50%로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 경제자유구역(FEZ) 지정을 통해 세계 혜택, 무관세 수입, 노동조건 완화 (장애인 의무고용 예외허용 등) 및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환경을 보다 개방적이고 자유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반경쟁적 관행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활성화, 소비자 권리 강화, 중소기업을 위한 경쟁적 환경 조성, 경제력 집중 억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권한을 가짐.
 - 강력한 수사권과 처벌권을 보유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이거나 위반사실이 발각되었을 경우, 무거운 과징금 부과 가능
- 2012년 4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품목에 대한 미국산 수입품 가격을 공표해 한미 FTA로 인한 관세 인하분이 가격구조에 반영되도록 노력함.
 - 그러나 미국정부는 한미 FTA로 인한 관세 인하가 시작되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소비자가격이 인하될 것이나 개별 가격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들어 위 정책에 우려 표명
- 한미 FTA 이행을 위해 2011년 12월 통과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미 FTA 발표일 이후 피조사자 (respondent)와의 합의권이 부여됨.
 - 불법적인 조사권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이 조사 중 겪는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ombudsman 제도 시행
- 또한 운영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자들이 판결 결과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즉각적으로 알리도록 규정을 개정함.

○ 기타 장벽

① 규제 개혁 및 투명성

- 한미 FTA에는 규제 투명성에 대한 미국 이해관계자의 강력한 우려를 반영해 광범위한 조항이 포함됨.
- 2012년 10월 행정절차법 개정으로 최소 입법예고 기간이 20일에서 40일로 늘어났으며, 의약품 분야 등의 사전고지 기간에 대한 법 개정 단행
- 또한 미국정부는 투명성 관련, 한미 FTA 이행사항을 예의주시할 예정

② 자동차

- 우리나라 자동차시장에 대한 접근성 향상은 미국정부의 핵심 과제이며, 한미 FTA 발효 즉시 승용차 관세가 8%에서 4%로 인하되었고, 상용차 관세 10%는 철폐됨.
-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한미 FTA 조항에 규제 투명성 조항과 더불어 비관세장벽 관련,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에 대해서 미국의 자동차 안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킴.
- 2012년 우리나라의 미국산 승용차 및 트럭 수입량은 전년 대비 50% 증가하였으며, 상당부분은 FTA 발효시점 이후 증가분임.
- 2011년 6월, 우리나라는 자동차 평균연비기준과 온실가스배출기준 입법화
- 2009년 기준, 판매수량이 4,500대 이하인 업체의 경우, 2012년에서 2015년까지 19% 완화된 기준 적용
- 승용차와 SUV 간 배출총량거래(emission credit sharing), 총량 이월(credit carryover), 구매차감(offset purchases) 허용

- 2012년 환경부는 자동차 온실가스배출량에 근거해서 신차 구입자의 차량 가격에 보조금 또는 불이익(부과금)을 주는 제도를 마련해 2015년 1월부터 적용하려 했으나 아직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함. 미국업체들은 이에 대해 우려 표명
- 미국은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자동차산업 및 미국정부 관계자와 이러한 계획을 상의해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한미 FTA 조항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임.

③ 오토바이

- 우리나라의 오토바이 소음규제가 최근 완화되었으나, 고속도로 통행 제한, 높은 세율, 담보 용자금지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함.
- 미국은 다소 위험한 소형 오토바이와는 달리 대형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은 안전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 아님을 지적하고, 대형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 금지조치를 철폐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

④ 의약품 및 의료기기

- 한미 FTA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가격 산정에 대한 변동을 사전 고지해야 하고, 주요한 관련규제 변경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특히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해야 함.
- 2012년 4월, 보건복지부는 특히 만료 의약품 등에 적용되는 새로운 의약품 가격 인하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음. 미국 정부는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공정하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인 가격산정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함.

- 미국기업들은 가격정책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새로운 의료기기를 도입하는데 있어 비효율성을 우려하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2011년 2월 수입가격(수입품의 경우) 또는 생산비용(한국 생산품의 경우)에 따른 가격산정 방식을 공표해 5월부터 발효됨.
- 2012년 10월 보건복지부는 5개 분야에 대한 가격 인하를 의료기기 업체에 공지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미국산 의료기기 매출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9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규모임.
- 미국기업들은 수입가격이 기기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며, 보건복지부가 기술혁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우려
- 미국정부는 의료기기의 가격정책은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하게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보건복지부가 이해당사자와 직접 협상하도록 촉구함.

□ 2013년 기술장벽보고서(TBT 보고서) 주요 내용

○ 양자 협의

- 우리나라와 미국은 정기적으로 양자 회의를 통해 TBT 문제에 대해 협의하여 해결책을 모색함.
- 2012년 한미 통상회의를 통해 중복적인 전기안전심사 배제, 전자 제품에 대한 최신 국제기준 도입, 새로운 화장품 라벨링 규정 도입 시 1년간 유예기간 제공 등 합의

○ 화장품 표기

- 2012년 8월, 10ml 이상의 모든 화장품 포장지에 표기(labeling) 의무를 부과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으며, 법안 통과 시 미국기업들에게 상당한 비용 및 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돼 미국 정부는 예의주시중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안

- 2011월 2월,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REACH: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of Chemicals)을 국회에 상정
- 빠르면 2014년 적용될 동 법안으로 화학물질 등록이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돼, 미 관련업체들이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2011년 6월과 11월 한미 TBT 회의를 통해서도 문제 제기
- 주요 문제점으로 ① 등록 부담 증가와 법안의 명료성 부족(EU REACH의 1톤이 아닌 0.5톤 이상 기준) ② 이중보고 의무 지적
- 2012년 9월에 환경부가 국회에 재상정한 법안에는 이중보고 의무 및 최소기준 수정 요구가 반영되었으나 최종 법안에 포함될 지는 아직 미지수이며, 따라서 미국정부는 예의주시 중

○ 유기농 제품 인증제

-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농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3년 5월 발효될 예정임.
- 동 법안에 따라 미국 유기농 제품은 한국에서 유기농 표기를 유지하기 위해 재평가를 받아야 함.
- 2014년 1월 이후 동등성 협정이 적용 가능하나, 미국은 2013년부터 동등성 협정을 적용하기 위해 협상 계획

○ 정보기술 제품에 대한 전기안전 규제

- 미국정부는 기술표준원 등과 정보통신기기의 안전기준 규제에 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

- 기술표준원은 프린터, 컴퓨터와 같은 저위험 정보통신기기에 적당한 안전기준이 필요하다는 미국의 제안을 반영하여 2012년 7월 관련 규정을 수정함.
 - 다만 한 다국적기업이 생산한 모든 동일제품에 대해서도 생산 공장별로 안전인증을 개별적으로 요구하며, 인증 갱신도 가능하지 않는 등 우려 요소 상존
- 솔라패널 인증
- 에너지관리공단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이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제품이 우리나라 솔라패널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함.
 - 미국은 실리콘계 박막형 솔라패널에 대한 인증만을 허용해 기타 미국산 박막형 솔라패널의 시장진입을 배제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함. 2012년 양자 통상회의 및 TBT 위원회에서 국제기준인 IEC 61646을 도입하는 방식 논의
 - 이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반영해 우리나라는 카드뮴 솔라패널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수행해 환경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판정, 이 평가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인증 기준 마련 고려 중
- 자동차부품 안전기준 및 인증
- 2011년 우리나라 정부는 특정 자동차부품에 대해 한국자동차안전기준 준수 의무 등에 대한 법률을 공포했으나 외국의 자동차안전기준을 수용하는 내용은 빠짐.
 - 2012년 이후 수개월 간의 논의를 거쳐 자동차부품에 대한 외국의 안전 기준 적용방식과 마킹(marketing)에 대한 문제를 해소함.

○ 핸드폰 특정 흡수율 표기

- 우리나라 정부는 2012년 휴대폰 전자파 등급을 2등급으로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제 고시안 공개
- 0.8W/kg 이하인 핸드폰은 1등급, 0.8~1.6W/kg인 핸드폰은 2등급으로 고시하며, 1.6W/kg 이상은 판매 금지가 주요 내용
- 미국기업은 등급 구분에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며, 두 등급 사이에 안전성에 차이가 있다고 호도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음.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예정임.

□ 2013년 위생검역보고서(SPS 보고서) 주요 내용

○ 생명공학

- 2008년 제정된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Living Modified Organism)과 관련한 우려사항 기술
- ①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의 수준을 넘는 과도한 규제, ② 중복적이며 과학적 근거가 미흡한 위해성 평가, ③ '비의도적 혼입(adventitious presence)'에 대한 협소한 정의, ④ 동 법의 제한적 적용범위(유전자 변형 식물에만 적용, 동물에는 비적용)
- 2012년 말 우리나라 국회에서 LMO법이 개정되어 2013년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미국정부는 기존 우려사항이 반영된 것을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에 있어 개선해 나가도록 협의할 계획
- 또한 우리나라 정부가 2012년 5개의 유전자변형 식물에 대한 승인을 완료했으나, 미국정부는 우리나라의 생명공학 농산물에 대한 검토 과정이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을 우려함.

○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 2008년 수입위생조건 합의 이후 양국 수출입 업체들이 30개월령 이하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자발적으로 제한했으며, 이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신뢰가 확보될 때까지의 한시적인 조치임을 명시
- 2012년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쇠고기 수출량은 5억 8,200만 달러에 달해 미국의 4대 쇠고기 수출시장이 되었음. 미국 정부는 미국의 위험 통제국 지위,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완전한 시장개방 노력을 기울일 것임.

○ 잔류최대허용치

- 우리나라는 농약의 '잔류최대허용치'(MRL: Maximum Residue Limits)를 매우 까다롭게 관리하며, 타국에서라도 미국 수입품이 기준을 위반한 것이 적발되면 해당 제품 재배, 운송, 수입업자 모두에게 규제 조치를 취함.
- 미국정부는 우리나라가 최신의 과학적 자료에 기반해 MRL을 유지하는 것을 지지하며, 동시에 우리나라 정부 요청에 따라 미국 농약 제조업체 및 등록업체로부터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

○ 체리

- 우리나라 정부는 운송 이전에 미국산 체리에 대해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처리를 할 것을 요구함.
- 미국은 메틸브로마이드 훈증 대체 방식을 도입하여 해상운송 및 유통 기간 연장 추진
- 이를 위해 2008년 이후 우리나라 조사관을 미국에 파견해 체리의 재배 과정을 확인하는 등 메틸브로마이드 훈증 대체 방법에 대해 협의 노력

III. 평가 및 시사점

□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시장접근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한미 FTA 발효로 5년 이내에 95%가 넘는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철폐되고, 2/3에 달하는 미국 농산물이 즉시 관세면제 혜택을 받는 점을 높게 평가
 - 특히 2012년 우리나라의 미국산 승용차와 트럭 수입량이 전년 대비 50% 증가했으며, 상당부분이 FTA 발효시점 이후라는 데 주목
 - 미국정부는 우리나라 자동차시장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핵심과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수출량이 50% 늘어난 점을 FTA 효과라고 언급
 - 그러나 미국 자동차업계에서는 한미 FTA에 따른 이득이 미미하다며,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차량보다 35배 가까이 많은 점 등 한국시장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 통신, 특사배송, 법률, 보험 및 금융서비스 등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친 시장접근성 향상을 긍정적으로 평가

□ 우리나라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 요구 거세질 듯

- 미국 정부는 미국의 위험통제국 지위,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완전한 시장 개방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
 - 한미 쇠고기 협상이 2008년 타결된 이후 한국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취한 조치라고 밝힘.

IV. 美 무역장벽보고서 요약 (한국 · 중국 · 일본 · 베트남 · 인도네시아)

1. 한국

□ NTE 보고서

분야	주요 내용
수입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FTA로 미국 농산품의 2/3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으며 기타 농산품도 관세할당(TQR)에 의거 무관세 대상으로 편입 ○ 쇠고기 관련, 2008년 수입위생조건 합의 이후, 양국 수출입업자들 간 30개월령 이하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키로 자발적으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위험통제국 지위,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완전한 시장접근 허용 지속 촉구 예정 ○ 쌀 관련, 2005년 최소시장접근(MMA) 연장협상(2014년까지)으로 한국의 쌀 수입량이 2005년 225,575톤에서 2014년 408,700톤으로 늘어났고, 2014년까지 미국 쌀을 매년 최소 50,076톤 수입하는 등 미국 쌀 수출 환경이 개선됨.
정부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FTA 체결 이후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포함된 기구보다 9개 추가된 50개의 중앙정부기구에 대한 조달 허용 ○ 공공부문 암호화 네트워크 장비 알고리즘으로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알고리즘인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는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ES 사용 미국 생산자의 시장 접근 제한
산업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산업은행 지주회사 체제로의 변경과 한국정책금융공사 분리 현황을 기술하고, 산업은행 국내외 상장 계획을 언급
지재권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지재권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습적 침해사범에 대한 엄벌제도(‘삼진아웃제’) 도입, 웹하드의 방통위 등록 의무화 등 ○ 다만, 온라인상 침해, 기업내 소프트웨어 지재권 침해, 대학가 서적 불법복제 등 우려 ○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의 체약국 중 하나이며, 한·미 FTA는 모든 종류의 지재권에 대한 선진적인 보호 조항, 주요 다자간 지재권 협정 가입 의무 및 단속 조항 등을 포함 ○ 국방부에서 인가받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으며, 미국측이 한국정부에 대해 공공기관이 합법적이고 인가받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을 건의했음을 언급

<p>서비스 장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방송·통신 관련, 지상파·케이블·위성방송의 외국 프로그램 쿼터 제한, 외국 재송신 채널에 대한 한국어 더빙 및 지역광고 제한 등 지적 ○ 한미 FTA 발효로 한국 법률시장이 개방되었으며,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외국인 법률전문가 고용 및 외국 로펌 한국 사무소 개설이 허용되었으며, 향후 단계적 개방이 이루어질 계획 ○ 보험과 금융 관련, 한미 FTA 발효로 인해 금융 관련 법규 사전고지 기간 연장 등으로 법규 투명성 개선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농협중앙회법을 개정,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만들고, 농협금융지주회사 아래 출범하는 농협생명과 농협손해보험 등 2개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한미 FTA 금융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예의 주시 ○ 금융관련 정보의 해외이전 관련, 한국은 현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한국 내에 서버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한미FTA 및 한-EU FTA에 따라 '13.7.1부터 특정 정보처리 업무의 국외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 인터넷 관련, 고객정보, 고화질 지도 이미지 및 관련정보를 외국에 저장하는 것을 규제하는 정책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한 규제 때문에 미국의 전자상거래 업체가 한국전용 서비스를 개발하지 않는 한 한국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 - 또한 한국 업체들이 이미 제공하고 있는 길찾기, 실시간 교통정보 등의 서비스도 해외 업체가 제공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지적 ○ 한국방송통신위원회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규제 관련 미국 정부와 기업의 우려에 대해 관련 규정 개정을 약속했고, 미국은 이의 이행사항을 예의 주시중
<p>투자 장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 개혁을 통한 투자 장벽 제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과세 등 투자 관련 규제 결정과정의 투명성 부족 문제 제기 ○ 현재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49%로 제한되어 있으나 한미FTA에 따라 2014년 3월부터 외국인 100% 소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지상파·케이블·위성사업자 등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외국 위성재송신 채널 지분 제한 등 유지 ○ 쌀·보리 경작, 육류 도매, 발전·배전·전기 판매업, 뉴스 간행 및 출판 사업 등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등 존재 ○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내 세계 혜택, 무관세 수입, 노동조건 완화 (장애인 의무고용 예외허용 등) 등 기업환경 개방 노력 긍정적 평가
<p>반경쟁적 관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활성화, 소비자 권리 강화, 중소기업을 위한 경쟁적 환경 조성, 경제력 집중 억제를 포함한 폭넓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이행력을 갖게 된 것을 평가 ○ 한미 FTA 이행을 위해 입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안이 2011년 12월 통과되면서 공정위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합의 권한 부여

기타 장벽	규제개혁 및 투명성	○ 기존 행정절차법상 최소 입법예고기간은 20일에 불과했으나, 한·미 FTA 이행을 위한 법개정으로 동 기간이 40일 이상으로 연장
	자동차	○ 한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접근성 향상은 미국 정부의 핵심 과제 - 2012년 한미 FTA 발효로 관세가 하향조정 되거나 철폐됐으며 (예: 승용차 8%→4%), 미국 안전기준 인정으로 관련 비관세 장벽 철폐 ○ 2011년 6월, 한국정부는 자동차평균연비기준과 온실가스 배출기준입법화 ○ 2012년 환경부가 마련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에 근거해서 신차 구입자의 차량 가격에 보조금 또는 불이익(부과금)을 주는 제도에 대해 우려 표명
	오토바이	○ 한국의 오토바이 소음기준은 최근 몇 년 동안 완화되었으나 오토바이 고속도로 주행금지, 높은 세율, 담보 용자금지 등 우려
	의약품 및 의료기기	○ 한미 FTA 조항에 따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 산정에 대한 변동은 사전 고지하며, 한국 정부는 주요한 관련 규제 변경을 설명할 의무가 있음. ○ 2012년 보건복지부는 특히 만료 의약품 등에 적용되는 새 의약품 가격 인하정책을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미국 정부는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공정하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인 방식의 가격산정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함.

□ TBT 보고서

분야	주요 내용
양자 협의	○ 한국과 미국은 정기적으로 양자 회의를 통해 TBT 문제에 대해 협의하여 해결책을 모색함. - 2012년 한미 통상회의를 통해 중복적인 전기안전심사 배제, 전자제품에 대한 최신 국제 기준도입, 새로운 화장품 라벨링 규정 도입 시 1년간 유예기간 제공 등 합의
화장품 라벨링	○ 2012년 10ml 이상의 모든 화장품 포장지에 표기(labeling)의무를 부과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으며, 법안 통과 시 미국 기업들에게 상당한 비용 및 부담 초래가 예상돼 미국 정부는 예의 주시 중
정보기술 제품에 대한 전기안전 규제	○ 미국 정부는 한국 기술표준원 등과 정보통신기기의 안전기준 규제에 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 - 기술표준원은 프린터, 컴퓨터와 같은 저위험 정보통신기기에 적당한 안전기준이 필요하다는 미국의 제안을 반영하여 2012년 7월 규제를 수정함. - 다만 한 다국적기업이 생산한 모든 동일제품에 대해 개별적으로 안전인증을 요구하며, 인증 갱신이 가능하지 않는 등 우려 요소 상존

<p>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법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2월 한국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REACH)을 국회에 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빠르면 2014년 적용될 동 법안으로 화학물질 등록이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돼, 미 관련업체들이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2011년 6월과 11월 한미 TBT 회의를 통해서도 문제 제기 - 주요 문제점으로 ① 등록 부담 증가와 법안의 명료성 부족 (EU REACH의 1톤이 아닌 0.5톤 이상 기준) ② 이중보고 의무 지적 - 2012년 9월에 환경부가 국회에 재상정한 법안에는 이중보고 의무 및 최소 기준 수정 요구가 반영되었으나 최종 법안에 포함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며, 미국 정부는 예의 주시중 ※ REACH: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of Chemicals
<p>유기농제품 인증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농 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3년 5월 발효될 예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법안에 따라 미국 유기농 제품은 한국에서 유기농 표기를 유지하기 위해 재평가를 받아야 함. - 동 법안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동등성 협정이 적용가능하나, 미국은 2013년부터 동등성 협정을 적용하기 위해 협상 계획
<p>솔라패널 인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이 한국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한국 솔라패널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리콘계 박막형 솔라패널에 대한 인증만을 허용해 기타 미국산 박막형 솔라패널의 시장진입을 배제 하는 것에 대한 우려 표명 - 이에 대한 미국 우려를 반영해 한국은 카드뮴 솔라패널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수행해 환경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판정, 이 평가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인증 기준 마련 고려 중
<p>자동차부품 안전기준 및 인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한국 정부는 특정 자동차부품에 대해 한국 자동차안전기준 준수 의무 등에 대한 법률을 공포했으나 외국의 자동차안전기준을 수용하는 내용은 빠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이후 수개월 간의 논의를 거쳐 자동차부품에 대한 외국의 안전기준 적용방식과 마킹(marking)에 대한 문제를 해소함.
<p>핸드폰 특정 흡수율 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한국은 휴대폰 전자파 등급을 2등급으로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제 고시안을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W/kg 이하인 핸드폰은 1등급, 0.8~1.6W/kg인 핸드폰은 2등급으로 고시하며, 1.6W/kg 이상은 판매 금지가 주요 내용 - 미국 기업은 등급 구분에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며, 두 등급 사이에 안전성에 차이가 있다고 호도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미국은 한국과의 양자 협의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예정

□ SPS 보고서

분야	주요 내용	
생명공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제정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과 관련한 우려사항 기술(※ LMO: Living Modified Organis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의 수준을 넘는 과도한 규제, ② 중복적이며, 과학적 근거가 미흡한 위해성 평가, ③ “비의도적 혼입”에 대한 협소한 정의, ④ 동 법의 제한적 적용 범위 (유전자변형 식물에만 적용, 동물에는 비적용) - 2012년 말 한국 국회에서 LMO법이 개정되어 2013년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기존 우려사항이 반영된 것을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에 있어 개선해 나가도록 협의할 계획 ○ 생명공학 농산품에 대한 검토과정에 예측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을 우려함. 	
식품안전	<p>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수입위생조건 합의 이후 양국 수출입 업자들이 30개월령 이하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자발적으로 제한했으며, 이는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확보될 때까지의 한시적 조치임을 명시 ○ 미국의 위험통제국 지위,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완전한 한국시장 개방 노력을 기울일 것
	<p>잔류최대 허용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농약의 ‘잔류최대허용치’(MRL*)를 매우 까다롭게 관리하며, 타국에서라도 미국 수입품의 기준 위반이 적발되면 해당 제품 재배, 운송, 수입업자 모두에게 규제 조치를 취함 ※ MRL : Maximum Residue Limits
	<p>체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틸브로마이드 훈증 대체 방법을 도입하여 해상운송 및 유통기간 연장 추진 - 2008년 이후 한국 조사관을 미국에 파견해 체리의 재배과정을 확인하는 등 메틸브로마이드 훈증 대체 방법에 협의 노력

2. 중국 (NTE 보고서)

분야	주요 내용
수입장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 12월 WTO 가입 이전까지 중국은 고관세, 쿼터제, 비관세 장벽, 교역권 제한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 ○ 2002년부터 중국은 상품 관세율 인하, 수입쿼터제 적용 상품 대상 축소, 라이선싱 절차의 투명성 강화 등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지만, 여전히 특정 산업에 대한 수입장벽 문제 상존 ○ 자동차 등 국내민감산업에 대해 자동차(25%) 등 고관세 유지 ○ 통관시 세관원에게 과도한 품목분류 재량권 부여 및 일부 세관원은 관세부과 시 거래가격이 아닌 준거가격(reference price) 적용 ○ WTO 가입 이후 투명성과 절차상의 공정성 요건이 강조되면서 중국과 관련한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관심 고조(중국은 2012년말 기준 17개 국가와 경제권 대상 반덤핑 규제 107건, 반덤핑 조사 12건 진행중) ○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증가된 저율관세할당(TRQ)를 적용, 밀, 옥수수, 쌀, 면, 모, 설탕, 팜 오일, 콩기름, 비료에 1%에서 9% 수준의 쿼터 내 관세율(In-quota duties) 적용 ○ 중국은 자국의 농업 보조 수준이 WTO의 농업 생산 최소허용보조 수준인 8.5%에 미치지 않는다고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지만 실제로는 최근 농업개혁정책의 일환으로 농업에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중국은 최근 재제조(remanufactured) 상품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이는 소비자가 해외에서 생산된 저가의 고품질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 지적
수출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정부가 원자재 수출에 대해 쿼터제, 관세, 허가 조건 등 규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중국의 수출 제한은 철강, 화학제품, 전기 및 하이브리드 승용차, 에너지 절약형 전구, 자석,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광섬유 케이블, 촉매변환장치, 반도체 칩 등과 같은 다운스트림 제품을 생산하는 외국 생산업체에 영향 ○ 전반적인 투명성 결여는 중국정부의 수출 보조정책과 보조금 액수를 측정하기 어렵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수출보조 프로그램은 대부분 정부의 내부 행정처분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러한 수출보조 정책은 중국 수출품의 저렴한 가격으로 직결, 해외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침 - 2011년 2월 WTO에서의 중국과 협의 결과 문제가 있는 수출 보조 프로그램 수정 및 개선에 합의

지재권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종합무역법 스페셜 301조에 근거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계속되는 지재권 관련 법률 불이행과 지재권 보호 미흡은 미국의 수출과 투자진출에 장벽으로 작용 - 도서 및 저널 불법 복제, 사업용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지재권 침해,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 도소매 단계에서의 위조 등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서비스 장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 여전히 서비스 부문에서 새로운 라이선스 발급을 불허하거나 불분명하고 느린 라이선스 발급절차를 통해 대중국 무역 및 투자 방해 ○ 보험 서비스의 경우, 외국인 생명보험업체는 오직 합작투자업체의 형태로만 설립이 가능하며, 외국인주식 지분율은 최대 50%까지로 제한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5월 중국은 제3자 자동차 배상책임보험(mandatory third-party liability motor vehicle insurance) 시장을 열겠다는 높은 수준의 이행 약속을 공표 ○ 은행 서비스의 경우, 대표 사무소를 2년간 중국에 운영했고, 약 100억 달러 이상의 총 자산을 소유한 외국은행만이 중국에서 법인설립 신청이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화 이후에도 해당 은행은 3년간 중국에서 운영되었고 2년 연속으로 수익을 창출했다는 증거가 가능한 경우에만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위안화 소매영업을 할 수 있음. ○ 건설·엔지니어링·건축 서비스의 경우, 관련 법령 제 113, 114조는 외국 기업에 제한적인 조건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투자기업의 현지법인화 요건, 외국 투자기업이 충족하기 어려운 기술인력 확보 요건, 높은 최소 자본 요건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통신 서비스는 외국기업에 상당히 제한적인 시장개방을 유지하고 있는 부문 중 하나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승인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기본통신서비스의 최대 외국인 지분율은 49%, 부가가치 통신서비스는 50%로 제한함. - 특히, 부가가치 통신서비스의 경우 라이선스를 취득한 국내 통신 공급업체는 20,000여개가 넘는데 반해, 외국기업이 라이선스를 취득한 사례는 19건 밖에 되지 않아 통신분야 투자 장벽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 위성 서비스의 경우에도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라이선스를 외국기업이 취득하는 데에 국내 정책이 상당히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청각 및 관련 서비스의 경우, 도서, 신문, 잡지, 음반, 비디오, 영화, TV프로그램의 수입 및 유통을 강력하게 제한

<p>투자 장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2011년 8.1% 증가한 수치인 1,240억 달러였으나 2012년 10월 말에는 914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3.45% 감소한 수치를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 세계 2위의 외국인 직접투자 대상국이지만, 투자자들은 중국의 투명성 결여, 법 집행의 일관성 결여, 지적권 보호에 취약한 구조, 부패, 불확실한 법체계 등을 이유로 우려 제기 ○ 2012년 5월 미-중전략경제대화(S&ED)에서도 중국은 계속적으로 해외투자를 위한 개방을 약속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해외투자에 상당한 제약을 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보조금 확대, 중국에만 특별 적용되는 기준 적용 등 잘못된 산업정책들로 인해 비효율적이며 독점적인 기업이 보호받는 구조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특히 중국정부의 관여가 이를 더 부추기는 경향이 있음. ○ 중국은 2012년 S&ED에서 미국과의 양자간 투자협정을 강화할 것에 동의하며 2012년 12월 기준 총 8번의 교섭이 진행돼 투자 장벽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 ○ 중국에서 발간된 투자 지침으로는 최근 개정된 해외투자카탈로그 (Foreign Investment Catalog)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투자 관련 규제 및 정책에서의 일관성 결여, 특정 서비스 부문에 제한된 투자지침 적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우려 제기
<p>정부조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재무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중국의 정부조달 규모는 대략 1,8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한 수치는 2010년 발표된 수치보다 30% 이상 증가된 수치로 총 지출의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은 2012년 11월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을 위한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미국과 타 정부조달협정국들이 제기한 요구를 거의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7월까지 다른 협정국 수준에 상응하는 새로운 개정안을 제출토록 요구
<p>자주혁신· 기술이전· 전략적 첨단산업 장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정부의 자주혁신제품(indigenous innovation products) 승인에 따른 미국기업의 차별대우에 대한 우려는 양국 간 전략경제대화 (S&ED)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소유했거나 중국 내에서 개발된 제품을 자주 혁신제품으로 승인, 정부조달 시 특혜를 부여하는데 대해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 우려를 제기한 바 있음. ○ 중국정부와 국유기업이 중국내 투자조건으로 기술이전과 지적권 공유를 유도하는데 대해 우려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중국은 정부차원의 7개 첨단산업(high-tech sector) 혁신진흥계획을 발표 ○ 미국은 중국의 전략적 유망산업정책의 방향에 대한 의문을 제기, 특히 과도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자국의 회사 혹은 상품에 차별대우가 행해지는 것에 대해 우려 표명
전자상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 최근 인터넷 사용에 있어 급격한 성장을 경험, 2012년 6월 기준 중국 내 인터넷 사용자 수가 대략 5억 3800만에 이른 것으로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따라 검색 엔진, 온라인 광고, 온라인 게임, 전자메일, 인터넷 컨설팅 등 온라인 비즈니스 산업이 빠르게 개발되는 추세 ○ 하지만, 몇몇 관련 부처는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사용에 제한 조치를 부과,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고 소비자 사생활 보호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구매를 하는 인터넷 사용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관련 규제에 따르면, 외국 기업은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중국시장에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중국 업체와 협력해야 함. ○ 또한,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명확한 법적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국가 간 데이터 교류 및 데이터 주권에 관한 우려 제기
반경쟁적 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에는 독과점 생산을 부추기는 법과 규정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들은 특히 전력이나 운송과 같은 자본집약형 부문과 유선전화서비스와 우편 서비스와 같이 전국적인 보급이 필요한 산업에 집중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한 반경쟁적 관행이 특히 국유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당국에 의해 국가적 차원에서 실행되는 것이 큰 문제로 꼽힘. ○ 중국정부는 2008년 8월 반경쟁적 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점금지법(Anti-monopoly Law)을 제정, 독점금지위원회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여전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에서의 국유기업 및 정부의 독과점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당 법을 적용할 지는 불분명
기타 장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장벽으로는 크게 규제개혁 및 투명성과 법률 체계가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관련 법규 및 조치 등을 담은 공식 문서, 공개논평, 법규, 상사분쟁 처리, 노동, 부패, 토지 관련 이슈가 주요 이슈로 다뤄지고 있으며, 2013년 NTE 보고서에는 인허가 관련 행정처리(Administrative Licensing)에 관한 내용이 새로이 추가됨.

3. 일본 (NTE 보고서)

분야	주요 내용
수입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1월 미일 양국은 미국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출 확대를 위한 새 조건에 합의하였으며, 2013년 2월 1일 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2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을 30개월령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큰 폭의 개정이 있었으며, 수시 또는 정기적 협의를 통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 해결 추진 - 일본은 쇠고기 수입량이 직전년도의 17% 이상 증가할 경우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38.5%의 관세를 해당연말까지 50%로 상향조정 ○ 쌀 관련, 1999년 저율관세할당(TRQ)을 마련한 이래, 일본의 미국 쌀 수입품은 대부분 정부가 구매해 산업 가공품 등으로 판매되거나 식품지원품으로 수출되었으며, 극히 일부만 미국 쌀로 소비자에게 판매됨. ○ 일본은 농림수산부 산하 식품부를 통한 밀 수입만을 허용하며, 수입가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일본 제분소에 재판매해 일본 내 밀제품의 소비를 위축시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법개정을 통해 농림수산부의 밀 재판매 가격을 보다 빈번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미국은 시장가격 왜곡 우려 ○ 생선 및 해산물 가공품 관련, 일본은 명태, 대구, 고등어, 정어리, 오징어, 청어 및 명란, 연육 등 특정 제품에 수입 할당을 둠 ○ 쇠고기, 감귤류, 유제품, 다양한 가공식품 및 기타 농업품 등 식료품에 10.5%~57.7%의 높은 관세를 유지 ○ 일본정부가 가공 목재품 및 건축재료에 대해 경사관세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는 반대 입장 견지 ○ 일본은 지속적으로 가죽 신발제품에 대해 TRQ를 적용해 미국 제품의 시장 진입에 방해요소로 작용 ○ 세관 관련, 미국정부는 일본이 통관절차를 개선하고, 유통 속도를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게 할 수 있는 방안 지속 촉구
서비스 장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일본 우편국의 민영화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우편 금융 개정이 일본 금융시장 경쟁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2012년 개정된 우정민영화법으로 일본 우편국에 대한 혜택이 오히려 강화되었으나, 미국 정부는 장기적으로 일본 우편국과 민간 기업 사이에 금융, 보험 등의 부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지도록 주시할 것 - 특급운송 부분에 대해 일본 우편국 및 타 기관 간의 통관 비용, 보조금 등에 대한 불평등 조건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사보험 시장규모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2번째 (FY2011 순보험료는 대략 4,625억 달러)인만큼 공정하고 열린 경쟁을 위한 규제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생명보험의 경우, 일본 우편국과 민간 기업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일본 우편국 사업 및 관련기관 간의 교차보조 (cross-subsidization)금지, 민간 기업에 비차별적인 네트워크 접근 기회 제공 등의 조치가 필요 ○ 유선전화 상호연결, 주요통신업체 규제, 이동망 착신접속, 이동 무선망 라이선스 현황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3월 일본 총무성은 상호연결 서비스 요금을 규정, 국제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높은 수준 - 일본 내 대형통신업체인 NTT는 2012년 9월 기준 가입자의 집까지 광섬유로 연결하는 가입자망(FTTH) 시장의 73.9%를 점유, 통신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일본은 2005년부터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하여 2012년 3월 Softbank에 900MHz 주파수 대역을, 2012년 6월 NTT DOCOMO, KDDI, eAccess에 700MHz 주파수 대역을 지급함. ○ 2012년 1월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와 정보통신기술(IT) 서비스에 대한 교역원칙을 체결했지만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헬스 IT, 프라이버시 지침, 전자상거래 등에 대해 개선 조치를 촉구할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2013년 NTE 보고서에는 해외 온라인 콘텐츠에 부과되는 소비세 항목이 추가, 일본 대장성은 이에 대한 효과적인 세금부과 방식을 두고 논의 중이며 미국은 관련 결정사항을 예의주시 할 것
지재권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 전반적으로 강력한 지재권 보호 및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미국은 특정 분야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촉구할 예정 ○ 일본은 2011년 10월에 서명한 위조 및 불법복제방지협정(ACTA)을 2012년 9월 정식 비준, 위조 및 판권 침해 확산 방지를 향한 적극적 의지 표명 ○ 일본은 영상저작물 보호에 있어 70년 연한을 보장하지만 다른 저작물에 대해서는 50년 연한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모든 저작물의 보호 연한을 확대할 것을 요청, 2012년 추가 개정된 저작권법은 다운로드받은 음악 또는 영화를 배포하는 불법복제소스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는 내용이 추가됨. ○ 미국 정부는 2011년 10월, 지리적 표시(GI) 보호를 위한 고유 시스템을 5년 내에 개발하겠다는 일본의 공표와 관련한 진행사항을 모니터링 중에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이와 관련하여 GI 보호 범위와 GI 등록 보호 절차와 같이 주요 원칙을 이전과 같이 고수할 것을 요구
정부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8년, 1994년 미일 공공사업 협의를 통해 일본 조달절차를 국제적으로 개방해야하나, 건설부문에서 미국기업의 공공사업 입찰율은 현재 1% 미만임. ○ 일본정부 IT조달 부문에서는 업체선정과정의 투명성 부족, 단독 입찰계약에 대한 과도한 의존, 지적재산 소유권에 대한 제약이 미국회사의 일본정부 IT조달 참여를 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일본은 중앙정보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를 처음으로 임명하였으며, CIO가 관련분야 개혁을 추진해 IT조달 참여 저해 요소 개선할 것을 촉구
투자 장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말 외국인 직접 투자자들의 주식은 일본GDP의 3.7%였음 (OECD 평균치 : 28.8%) ○ 국가경제 재활성화를 위해 FDI의 중요성이 인식되었으나, 국내 규제 개혁 실행은 미흡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부처간 회의에서 2020년까지 일본 FDI를 2배로 확대하는 목표를 수립했으나, 현 정부가 이 안을 수용할 지는 미지수 ○ 국외 투자자에 대한 태도, 부적당한 기업지배구조, 재정투명성과 기업내용공시의 부족과 같은 사항이 국경 간 인수합병에 장애
반경쟁적 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 벌금과 처벌 강화, 규제법 확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집행 제도와 기구의 강화를 포함한 경쟁법 개선에 노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발효된 독점방지 개정안에서 독점을 주도한 회사에 대한 과태료율을 50%까지 늘리고, 형량도 5년으로 늘림. - 일본공정거래위원회(JFTC)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개선을 위해 2009년 일본정부는 도쿄재판소에 즉시 전달 가능하도록 사후 공청 시스템 폐지계획을 밝혔으나 아직 입법되지 않음. - 담합입찰 방지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일본 국도교통성은 불법 공공 담합입찰에 관여하기 위해 JFTC 행정 제재를 강화
기타 장벽	규제 개혁 및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자문단(advisory groups), 의견제출 절차 및 규제와 규제 집행의 투명성 강조
	상거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일본상법 개정으로 국내와 국가 간 삼각합병과 같은 몇몇 새로운 합병방식 허용 ○ 2012년 11월, 도쿄증권거래소는 대표이사들에게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첫 번째 안내서를 발행하는 등 해외 개방 노력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비관세 장벽이 일본 자동차 시장으로의 진출을 방해 - 표준 및 인증, 규제 수립시 이해당사자 참여 기회 제한, 유통 및 서비스 구축 장벽, 수입차특별취급제도(PHP) 하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균등한 기회 부족 등이 장애로 작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4월1일까지 12개월간 신약검토, 2014년4월1일까지 14개월간 신 의료장비 검토와 같이 신제품 전체 검토시간을 줄이는 등 획기적으로 제약과 의료장비 진입 장벽이 완화됨.
보조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보건용식품(FOSHU)이나 영양소기능 강조표시(FNFC)를 승인 받은 제품만 건강 혹은 구조/기능 강조표시가 허가됨. - FOSHU의 승인 비용 및 기간이 부담이 되며, FNFC 포함 비타민과 미네랄이 제한돼 승인이 어려움.
화장품 및 의약품외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PAL) 하에 준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약용화장품과 같은 특정 제품에 대해 시판 전 승인 요구
식품및영양 보조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성분 및 식품 첨가물 함유비율, 제조과정 표기 의무가 있어 제조과정의 부담이 훨씬더러 경쟁사에게 정보를 노출하게 됨.
항공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항공우주 분야는 일반적으로 해외 기업에 개방적인 편 ○ 일 국방성은 일본 내 비행기 수요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며, 상당수의 비행 군수품 입찰은 해외입찰을 제한함. ○ 미일협의위원회는 2011년 공동성명을 발표해 우주안보에 대한 협력을 명시
운송 및 항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항만의 투명성 부족, 라이선싱 요구사항 등에 대한 관행들 때문에 외국 해운기업 활동이 제한되는 것을 우려 - 2011년 미국 연방해사위원회는 1995년 시작된 조사를 마치면서 아직 우려사항들이 모두 해소되지 않아 추후 주시할 것 명시

4. 베트남 (NTE 보고서)

분야	주요 내용
수입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몇 년 사이 높아진 관세율을 수입품에 적용하기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품목: 껍질 벗긴 호두, 케찹과 토마토 소스류, 잉크젯 프린터, 스테인리스강 환봉과 막대류 ○ 비관세 장벽 관련, 2001년 이래로 많은 비관세 장벽들을 철폐했으나, 여전히 존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장난감, 중고 소비재, 중고자동차부품, 30마력 미만의 중고 내연기관, 암호 장비와 암호화 소프트웨어 등 수입금지 - 소금, 담배, 계란, 설탕에 대하여 저율관세할당(TRQ) 부과 및 철강 제품 등에 대한 수입허가 - 2012년 9월30일부터 재수출 및 환적용 유해폐기물 수입을 금지하고, 중고 소비재와 냉동동물 부산물, 내장 수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함. 아울러 재수출용 와인, 맥주, 담배 수입에 대해 새로운 조건을 부과 - 가격통제를 위해 철강, 액화석유가스, 화학비료, 동물용의약품, 백신, 소금, 6살 미만 어린이용 우유와 영양 파우더, 설탕, 쌀, 동물사료, 석탄, 종이, 교과서 등을 포함한 가격등록 리스트 확대 - 비효율성, 레드테이프, 부패에 따른 통관절차 애로 - 담배(시가 포함), 원유, 신문, 잡지, 음악 및 영상기록물 등의 수입은 지정된 국영무역업체만이 가능 - 이밖에 외국회사의 수입 의약품 상품 등록과 증류주 광고 제한 등에 대해서 우려 제기
정부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은 정부조달 WTO 협정의 조인국은 아니며, 2012년 12월 정부조달 WTO 위원회 옵저버 자격이 됨.
지재권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은 미국의 종합무역법 스페셜 301조에 근거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됨. ○ 지재권 보호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의 만연한 위조와 허가받지 않은 위성 채널 송수신 포착 ○ 미국, 더 엄격한 조치 촉구 중
서비스 장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각 서비스 관련, 외국인도 정부의 승인을 받고 현지인 파트너와 합작하여 투자 가능, 영화는 상영하기 전 검열을 받아야 함. ○ 방송 관련, 외국 유료 TV 사업자가 영화, 과학, 교육,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음악 프로그램을 번역할 때, 현지 에이전시를 이용토록 요구함. 외국 뉴스는 방송 전 베트남어로 된 내용 요약본을 제공해야 하고, 외국 콘텐츠 공급자에게도 현지 편집업체를 이용토록 요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사배송(Express Delivery) 관련, 2012년 1월부터 100% 외국 지분 허용 (현존하는 합작투자기업은 100%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전환 가능) ○ 법률 서비스 관련, 외국 로펌은 공증과 베트남 법과 관련된 법률 문서를 제공할 수 없음.(정부가 상업 계약까지 간섭할지는 아직 불확실) ○ 통신 관련, 지분 제한을 다양화하여 외국 기업의 참여 허용 (폐쇄 사용자 네트워크 (closed-user networks, 예: 기업 내 데이터 네트워크)는 최대 70%, 시설기반서비스는 최대 49%, 비시설기반서비스(non-facility-based service)는 최대 65%까지 외국인 지분참여 가능). 외국기업의 시설기반 서비스 (facility-based basic service)에서의 합작투자규제를 강화하고, 특정 웹사이트에 접근하지 못 하는 등의 인터넷 접근 제한에 대해 우려 제기 ○ 유통 서비스 관련, 경제성 평가가 불분명하고 불투명하게 이루어짐. ○ 은행 및 증권 서비스 관련, 주식회사형 은행 (joint stock bank)의 경우, 외국인지분을 최대 30%, 합작투자은행 (joint venture bank)은 최대 49%로 제한함. 외국계은행은 ‘한 지역에 한 지사만 설립 가능(one office per province)’ 한 제한을 둠. 2012년 9월 15일 이후로 최소 2년간 은행, 증권, 보험 분야에서 수익을 내면 100% 외국 지분의 증권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투자 장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증권, 보험, 광산, 통신, 부동산, 항만, 항공 등의 외국인 투자는 총리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등 조건부로 허용 ○ 모든 토지는 정부가 소유하고 관리하며, 50년에서 70년까지 외국투자기업에게 토지 임차 허용
전자상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새로운 규정 도입 준비중
기타 장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패와 관료제의 비효율성에 따른 투명성과 책임감의 부재가 문제가 됨. ○ 비즈니스와 투자를 통제하려는 정부 기관 사이의 경쟁이 부패의 여지를 줌.

5. 인도네시아 (NTE 보고서)

분야		주요 내용
수입 정책	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2011년 전자기기, 전자/비전자 밀링 머신, 화학물질과 같은 자국 제조상품과 경쟁하는 품목과 유제품, 과일주스와 같은 농산품의 관세율 인상 ○ 코코아와 팜유의 수출관세가 단계적으로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코넛, 비금속, 석탄을 포함한 다른 품목에도 적용 고려 중
	수입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비자동 수입허가절차(non-automatic import licensing procedure) 전면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기기, 가전제품, 직물, 신발, 장난감, 음식과 음료 등 대상 - 2010년 화장품이 추가되어 2015년까지 연장(83/2012)
	농산품 수입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품 수입시 농업부와 통상부의 규제를 모두 준수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같은 비자동 수입허가정책은 동물, 동물관련 제품, 설탕 등에도 적용
	기타 수입 허가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물, 의류, 커튼, 담요와 같은 완제품에도 비자동 수입허가 절차를 유지하여 승인을 받은 자가, 재수출을 하지 않는 조건 하에 수입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 철폐를 위한 협상 시도 중 ○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PC 등의 수입은 3년 이상의 업력과 3개사 이상의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경우에만 권한을 부여받아, 미국의 하드웨어 기업의 진출 제한 ○ 규범에 따르면 수입자는 산업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 각 수입품의 식별번호를 제출해야 함
	제약 시장 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제약회사는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제조하거나 식약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제약업체에 생산을 위탁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정책에 따라 세계적으로 상품성을 인정받고, 현지인에게 양질의 의약품을 제공하는 외국 기업일지라도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무기력해질 수 있음.
	수량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시행된 통상부와 농업부의 규제는 터키, 오리 등 수입금지 ○ 가공 과일, 옥수수, 소금 등 국내 생산, 수요, 계절적 특성 등에 기초하여 결정 ○ 인도네시아 내 제련사업 등 부가가치창출 활동 확대를 위해 수출 전 국내공정을 명시하는 법안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제정된 신평업법에 따라 2014년까지 제련소 건설이 완료되어야 함.

	상품 등록	○ 인도네시아어 라벨링, 상품 등록 과정 등은 미국과 그 외 국가들에 많은 부담과 예산을 요하므로 지속적으로 주시
	통관 장벽	○ 실제 거래가격보다 기준가격에 의거, 관세부과 - 수입자의 위험정도와 이전 90일 동안 수입된 동일·유사품목의 평균에 기초하여 가치 평가
정부조달		○ 국산 물품과 서비스 이용 장려 ○ 인도네시아 국산품의 부족으로 외국품을 조달할 경우 대응무역(countertrade), 현지제조, 옵션생산 요구
지재권 보호		○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종합무역법 스페셜 301조에 근거 우선감시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음. - 인도네시아의 온라인/오프라인 상의 위조와 저작권 침해 비율은 매우 높음(2011년 불법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비율 86%)
서비스 장벽	법률	○ '변호사' 자격증은 현지인에게만 발급되고, 국외 변호사는 '법률 자문단'으로서 근무 가능 - 현지 기업과의 동반자 관계 구축 필요
	우편과 물류	○ 우편 서비스는 현지인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며 외국인은 주(州) 단위의 국제 항공 등으로 그 범위가 제한 ○ 정보통신기술부는 합작투자를 통하여 주(州)단위 뿐 아니라 도시 단위의 국제 항공·해운운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언급
	의료	○ 외국인의 병원투자 최대지분은 67%로 제한 - 외국인의 건강연구센터, 개인출산 병원 등의 운영은 금지 ○ 인도네시아 의사 협회가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기 때문에, 외국인 의사가 자격을 획득하기란 거의 불가능
	금융	○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합작투자 또는 부분적인 소유를 통한 사업 참여를 가능하게 함.
	회계 감사 서비스	○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국내기업과 연계된 외국의 회계기업만 인도네시아 내에서 사업 허용 - 연계된 국내기업의 외국인 직원 비율은 10%이하로 제한
	영화	○ 인도네시아 영화 관련 법률은 쿼터제를 위한 수입제한, 외국기업에 의한 영화 배급 및 상영 금지
	교육	○ 인도네시아 내의 외국 대학운영은 무상교육, 현지 대학과의 공동 교육 등의 조건 하에 가능 ○ 현지인 강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만 외국인 강사 자격 부여

	<p>프랜차이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8월 인도네시아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설비, 물품 중 자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80%로 지정 ○ 2012년 10월 마스트 프랜차이지(가맹사업본부)가 운영할 수 있는 가맹점 수를 최대 150개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새로운 법안은 미국을 비롯한 많은 외국 기업들이 상당수의 가맹점을 처분토록 할 우려 있음.
<p>투자장벽</p>	<p>일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의 투자 환경은 법적 불확실성, 경제보호주의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음. ○ 2007년 인도네시아의 투자 법안은 공평한 대우, 국제적 중재 등을 포함하며 개선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지만 동시에 많은 수의 외국인 투자부분이 제한 - 중앙정부와 주(州) 사이의 투자 비중 결정에 대한 일관성 필요 ○ 2010년 원예 부분에서 외국인 자본 비중을 95%에서 30%로 감소시킨 새 원예관련 법 제정
<p>기타 장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정부 및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부패를 방지하고자 노력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투자 장애물로 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밖에 인프라 부족, 계약사항 준수여부, 법과 규정의 투명성 부족 등이 존재함.

작 성 자

- | | |
|-----------|--------|
| ◆ 워싱턴 무역관 | 권오승 과장 |
| ◆ 워싱턴 무역관 | 이윤정 대리 |
| ◆ 정보기획실 | 김준규 차장 |

Global Market Report 13-036

2013년 美 USTR 무역장벽보고서
평가 및 시사점

발 행 인 | 오 영 호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3년 4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346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13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